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8월 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가스산업과 이용환 과장(2110-4894), 이은경 사무관(2110-5467)

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'15년이후에도 사용 가능

- 장애인의 보호자인 장인·장모·의붓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·사용 허용
- 8.6일자로 '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' 개정·시행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LPG 자동차 사용 관련 국민편익 제고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,

○ **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를 완화**하는 "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"을 개정하고, 8.6(화)부터 시행한다고 밝힘

□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

① **일반인**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(HEV)를 2015년말까지만 구입·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으나

<사례1> A씨는 연료비 절약을 위해 LPG HEV를 2011년에 구입하였으나 얼마전 LPG HEV는 20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3년도 안된 자동차를 헐값에 팔아야 하는지 고민중

○ 8.6(화)부터 사용기한('15.12.31)이 폐지됨에 따라 **'15년이후에도 LPG HEV를 구입·사용**할 수 있게 됨

* '13.6월 기준 LPG HEV 18,337대 등록 (전체 LPG자동차 2,427,189대중 0.8%)

② LPG 자동차를 소유·사용할 수 있는 **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***에 **'배우자의 직계존비속' 추가**하여,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**장인, 장모, 의붓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·사용**이 허용됨

*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존비속의 배우자, 형제·자매

<사례2> A씨는 아들(C)이 있는 B씨와 재혼하여 함께 살고 있던 중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의붓자녀인 C씨의 부양을 받고 있으나, 현행 제도하에서는 C씨는 LPG 자동차 소유·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음

③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 1인당 1대로 제한함에 따라 LPG 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으나

<사례3>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A씨는 사용하던 LPG 자동차를 매매상에 매각 의뢰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였으나, 차량 보유제한(1대) 규정으로 인해 기존차량이 매각될 때까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음

○ **보유제한 유예기간(60일)을 도입**하여, 기존 차량 매각·폐차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이은경 사무관(☎ 02-2110-5467), 조현진 주무관(☎ 02-2110-54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